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1. 14 선고 2018가단42697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

피 고 1. A 주식회사

2. B

변론 종결 2018. 10. 31.

판결 선고 2018. 11. 14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,672,785원 및 그 중 23,192,488원에 대하여는 1997.2.22.부터 1997. 3. 23.까지 연 14%, 그 다음날부터 1998. 1. 2.까지 연 18%, 그 다음날부터 1998. 1. 14.까지는 연 21%, 그 다음날부터 1998. 7. 14.까지 연 27%, 그다음날부터 2015. 9. 30.까지 연 25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로, 11,219,467원에 대하여는 2015. 10. 1.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각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김태훈

청 구 원 인

1. 본건 보험계약자인 피고 A (주) {이하 피고회사라 함}는 소외 대우자동차판매 (주) {이하 피보험자라 함}로부터 차량을 할부 구입함에 있어, 그 할부금 납입채무의 담보로 원고 {변경전상호: 대한보증보험(주)} 발행 보증보험증권을 피보험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할부판매보증보험 계약 3건을 체결하였음.

보 험 계 약 내 용

증 권 번 호	보험계약자	피보험자	보험가입금액	보험기간
1 C	A (주)	대우자동차판매(주)	금 12,100,000원	1996.10.09. - 1999.10.08.
2 D	A (주)	대우자동차판매(주)	금 12,100,000원	1996.10.09. - 1999.10.08.
3 E	A (주)	대우자동차판매(주)	금 12,100,000원	1996.10.09. - 1999.10.08.

2. 위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인 피고회사가 피보험자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사고가 발생,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위 피고회사는 이를 즉시 변상하되, 지연될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14%의 연체이율을 적용하며,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약정하였음.

3. 피고 B 은 위 1-3번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할 채무 전부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음.

4. 그 후 보험계약자인 피고가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사고가 발생, 질권자인 소외 대우할부금융(주)는 원고 발행 보증보험증권에 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왔고, 그에 따라 원고는 1997. 2. 21. 위 1-3번 계약에 대하여 각 금 11,596,244원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였음.

5. 한편 원고는 본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 226878호에 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. 11. 27. 판결선고를 받았음.

6. 그러나 피고들은 위 1,2번 계약에 대한 지급보험금 합계금 23,192,4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, 위 3번 계약에 대하여 376,777원만을 일부변제 하였으나, 나머지 원금 11,219,467원 및 2015. 9. 30. 까지 지연손해금 53,260,830원의 합계금 64,480,297원과 위 원금잔액에 대한 2015. 10. 1. 이후 지연손해금을, 각 변제치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확정판결의 시효도 도래하고 위 금원을 변제받고자 피고들과 합의한 보증보험약관상의 합의관할에 의거 귀원에 본소를 제기함.